

공직선거법상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금지’는 무엇일까요?

구두로 1인에게 허위의 여론조사에 대하여 발언한 것이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에 해당될까요? 오늘은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금지’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제주시 ○○선거구에 □□당 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제주도의회 도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2018. 6. 4. 선거구민 공소외 1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28포인트 앞서고 있어. 거의 30퍼센트, 28퍼센트 이긴 걸로 나왔어. 이제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성당은 몰표야. 거기는 거의 80프로 이상 먹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후보로 등록한 이래 위 선거구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실시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이 여론

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포하였다면 상대 후보였던 공소외2는 다음날 피고인을 고발하였습니다.

쟁점

구두로 1인에게 허위의 여론조사에 대하여 발언한 것이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에 해당하는가?

지금부터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금지가 무엇인지 관련된 법률과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률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② 제9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도13687 판결-

1.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제252조 제2항의 취지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252조 제2항은 “제9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규정이다.

2.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행위태양인 ‘공표’의 의미 및 공표의 요건인 전파가능성에 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정도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행위태양인 ‘공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것을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알리더라도 그를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하나,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3.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공표 등이 금지되는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내용 및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가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한편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공표 또는 보도가 금지되는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는 선거인으로 하여금 객관성·공정성을 신뢰할 만한 수준의 여론조사가 실제 이루어진 결과에 해당한다고 믿게 할 정도의 구체성을 가지는 정보로서 그것이 공표 또는 보도될 경우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개연성이 있는 내용일 것을 요한다. 따라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가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는 정보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고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